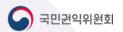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교육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환수·제재부가금·명단공표 부정청구등신고및신고자보호·보상

1



공공재정환수법교육자료

Π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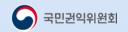
제정배경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I 공공재정환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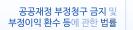
제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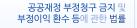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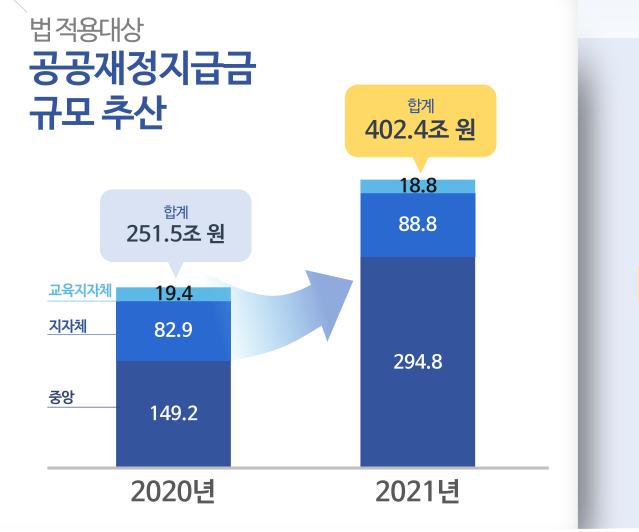
2020. 1. 1. 공공재정환수법시행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공공재정지급금 추산규모





2021년 공공재정지급금



국가재정 본예산 기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 포함

법시행후1년간, 공공재정지급금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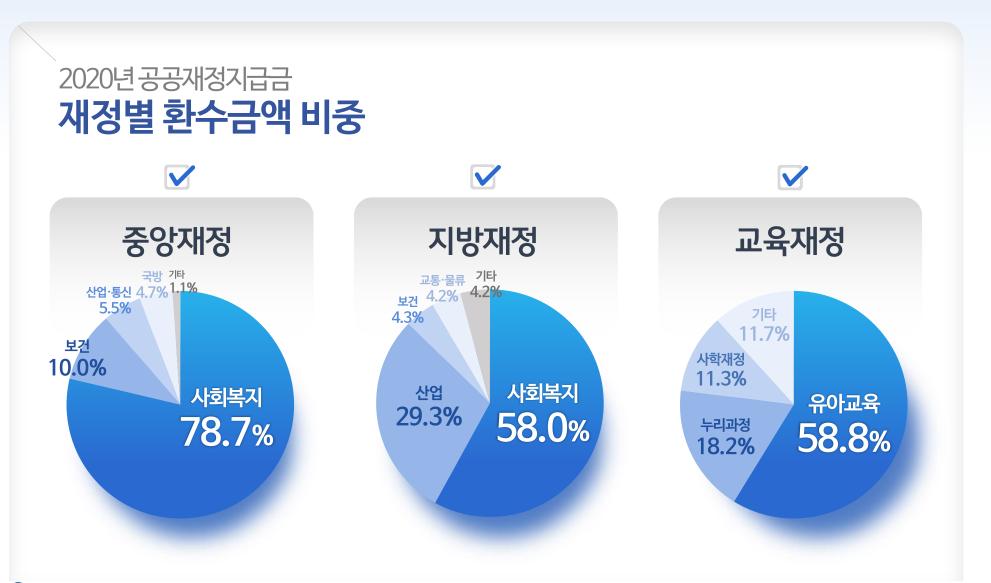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시행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시행후1년간, 공공재정지급금실태조사 결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억6백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전액 2천5백만 원 환수조치

한단체는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허위청구

사례1

2020년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사례

법시행후1년간, 공공재정지급금실태조사 결과



사례2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면?



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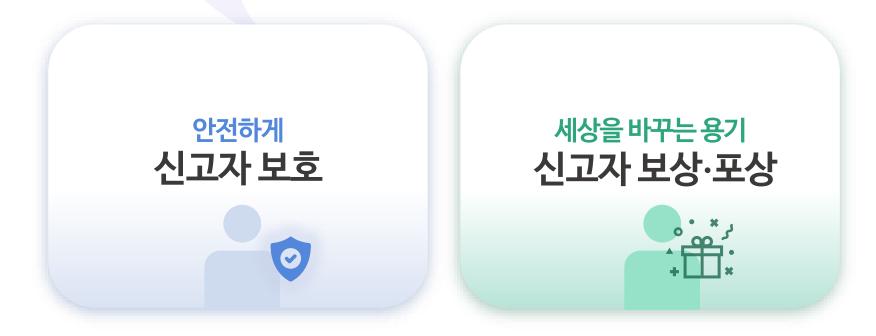




Π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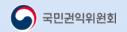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행위를신고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2020.1.1.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 01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및「관세법」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04 「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NO

Q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 받나요?

아니요,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므로 2019년에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우선 적용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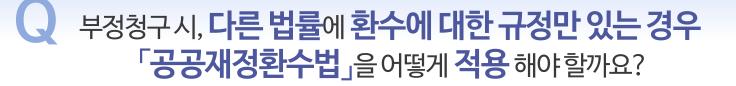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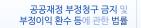




환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5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정청구등의 신고, 이행실태 점검, 기록관리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공공재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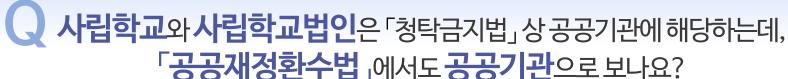


참고로,사립학교와사립학교법인은「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등의신고 및신고자보호와관련된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 한정하여공공기관으로봅니다.

·국·공립학교는공공기관에해당하나사립학교와사립학교법인은 「공공재정환수법」상공공기관에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도 **공공기관**으로 보나요?





N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18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소관

| 01 | 310-01 | 손실보상금 | |
|----|--------|---------------|--|
| 02 | 310-03 | 포상금 | |
| 03 | 310-04 | 기타보전금 | |
| 04 | 320-01 | 민간경상보조 | |
| 05 | 320-05 | 이차보전금 | |
| 06 | 320-06 | 구호및교정비 | |
| 07 | 320-07 | 민간자본보조 | |
| 80 | 330-01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09 | 330-03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10 | 340-01 | 해외경상이전 | |
| 11 | 340-03 | 해외자본이전 | |
| 12 | 350-01 | 기관운영출연금 | |
| 13 | 350-02 | 사업출연금 | |
| 14 | 350-03 | 금융성기금출연금 | |
| 15 | 350-04 | 민간기금출연금 | |
| 16 | 360-01 | 연구개발인건비 | |
| 17 | 360-02 | 연구개발경상경비 | |
| 18 | 360-03 | 연구개발건축비 | |
| 19 | 360-04 |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 |
| 20 | 360-05 | 연구개발활동비등 | |
| 20 | 360-05 | 연구개발활동비등 | |

| | 지방자치단체 소관 | | | | | |
|----|-----------|----------------|--|--|--|--|
| 01 | 301 | 일반보전금 | | | | |
| 02 | 302 |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03 | 303-01 | 포상금 | | | | |
| 04 | 306 | 출연금 | | | | |
| 05 | 307-01 | 의료및구료비 | | | | |
| 06 | 307-02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
| 07 | 307-03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 | | |
| 08 | 307-04 | 민간행사사업보조 | | | | |
| 09 | 307-08 | 이차보전금 | | | | |
| 10 | 307-09 | 운수업계보조금 | | | | |
| 11 | 307-10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 | | |
| 12 | 307-11 | 사회복지사업보조 | | | | |
| 13 | 308-01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 |
| 14 | 308-08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 | | |
| 15 | 308-09 |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 | | |
| 16 | 310-01 | 국외경상이전 | | | | |
| 17 | 402-01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 | |
| 18 | 402-02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 | |
| 19 | 403-01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20 | 403-03 |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 | | |

교육자치단체 소관

| 01 | 310-01 | 보상금 | |
|----|--------|----------------|--|
| 02 | 310-03 | 포상금등 | |
| 03 | 320-01 | 민간보조 | |
| 04 | 320-07 | 이차보전금 | |
| 05 | 320-11 | 학생및학생단체이전경비 | |
| 06 | 340-01 | 해외경상이전 | |
| 07 | 350 | 출연금 | |
| 08 | 470-01 |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
| 09 | 620-01 | 인건비지원 | |
| 10 | 620-03 | 목적사업비 | |
| 11 | 620-04 |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
| 12 | 620-06 |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
| 13 | 620-08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
| 14 | 620-09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
| 15 | 620-10 |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
| 16 | 620-11 | 사립학교시설지원 | |
| 17 | 620-13 |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 |
| 18 | 620-15 | 사립유치원학비지원 | |
| 19 | 620-16 |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 | |
| 20 | 620-17 | 학교운영비(지원금) | |
| 21 | 620-18 | 목적사업비(지원금) | |
| 22 | 620-19 |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 |
| 23 | 620-20 |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 |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개편 전 현재(21.10.):일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소관 예산 비목

| 교육자지난제 소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_교육부훈령) | | | | | | |
|---|----------------|------------------------|-----------|--|--|--|
| | | 2021 회계연도 | 2022 회계연도 | | | |
| 320-01 | 민간보조 | 現 320-01 민간경상보조 | | | | |
| | | 現 320-14 민간자본보조 | | | | |
| 620-17 | 학교운영비(지원금) |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1 | | | | |
| 620-18 | 목적사업비(지원금) |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2 | 예산과목에서 제외 | | | |
| 620-19 |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3 | | | | |
| 620-20 |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4 | | | | |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_행정안전부훈령)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現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고시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NO

Q 내부지침(사규)에따라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해당하나요?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mark>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mark> 내부 지침(사규)에 따라 <mark>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mark>은 「공공재정환수법」상 <mark>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mark>.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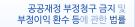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NO



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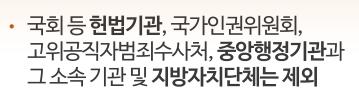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부정수익자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사업위탁근거법에 환수 등 제재처분에 대한 위탁근거는 별도로 없는 상황

예,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권한을 가질 경우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YES



따라서 국·공립학교가 교육청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부정청구등 하였다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8호에따른 **'부정수익자'의 정의**에따르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YES **예,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국·공립학교도「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수익자'가 될수 있나요?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오지급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그러므로실제로근로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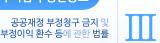
어린이집 교사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Q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등 유형에 해당하나요?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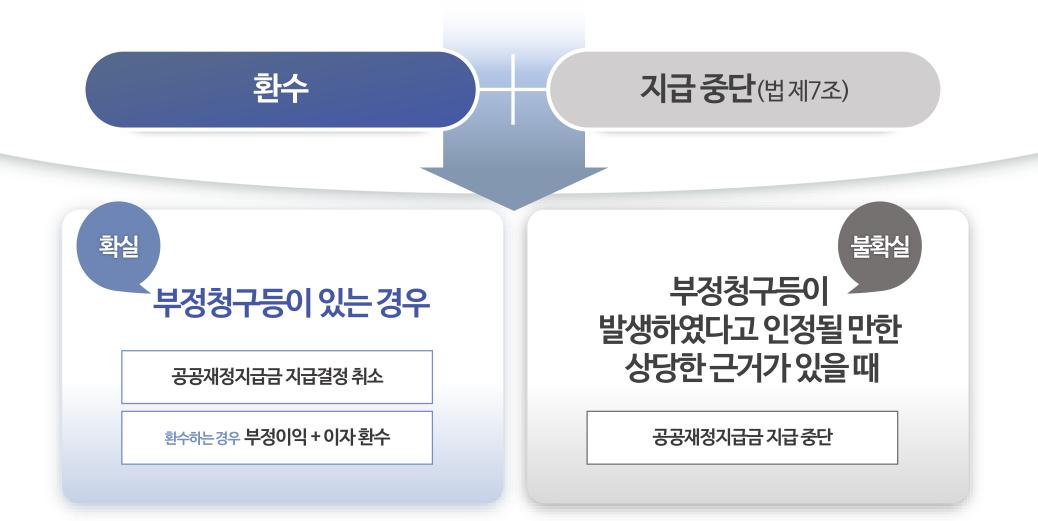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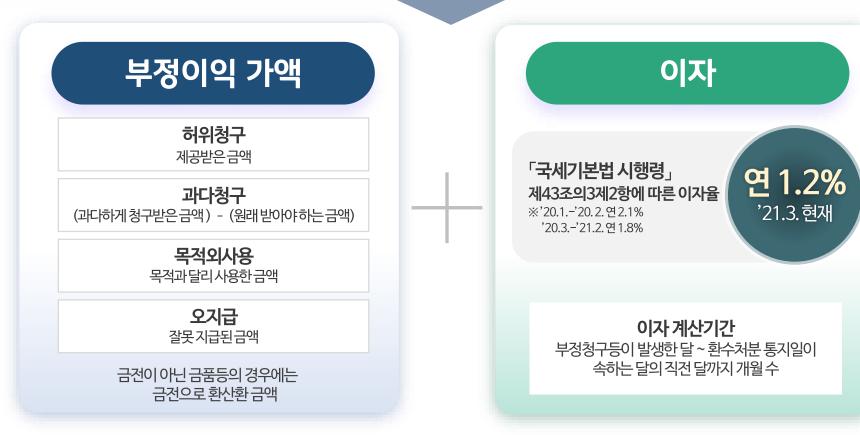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YES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예, 이자를 부과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에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자 부과없이 환수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YES



예,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우 포인트 배정 자체가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집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자 등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이자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법제9조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등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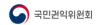


환수금액 산정 예시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청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해당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다른법률에따라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 법제10조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 법제11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Ш |
|---|------------------------------------|---|
| | | |
| ·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 | |
|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 |
|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 적발사실 無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 |
|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 |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해당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이익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YES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 할 수 있나요?

예,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이익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하며, 그 예외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만 제한적으로 인정, 문언적으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mark>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만 포함</mark>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NO 아니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하는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은 법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와 유사한지원금이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Q&A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환수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관련 예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실명 (대표자명) 주소 (시무소 소재지) | ② 생년 월일 (사업자등특번호 또는 법인등특번호) |
|---|---|-----------------------------------|
| ④ 부정이익 | | <u>.</u> ව |
| ⑤ 이자 | | 원 |
| ⑥ 환수금액(④+⑤ |) | 원 |
| ⑦ 제재부가금 부3 | 과 금액 | 원 |
| ⑧ 납부할 금액(⑦) | +⑧) | 원 |
| ④ 환수 및 제재부가 (부정청구등의 종 | | |
| ⑩ 납부기한 | | |
| ⑪ 납부기관 | | |
| ® 납부방법 | |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지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볼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형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Ш





행정청이 A씨에게 고지한 부정이익등의 환수 금액(30,105,000원)에 **'20.9.30.까지 납부기한을 주었는데 1,000만원 체납한 경우 가산금 계산은?**



법제12조, 영제8조에따라납부기한경과후

1주일 이내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3개월 경과일 부터 60개월 이내 5%





독촉장

관련 예시

독촉장 설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납부 의무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원 금액 게 ①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월 일까지 년 원 월 가산금 ② 년 일까지 독촉내용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월 일까지 년 원 년 월 일까지 금맥 게(①+②)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44





Ш

법제13조 행정청이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단공표 관련 예시

| | 설명 | | 생년월 | 일 | | | | | | |
|--------------------------------------|---|-------------------------------|---|--|--------------------------------|--------------------|---|--------|---------|---------------------|
| 명단공표 | 주소 | | | | | | | | | |
| 대상자 | T- | | | | | | | | | |
|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설 | 명·상호·나이 Ş | 및 주소 | | | | | | | |
| |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 | 표자의 설명·나 | 이·주소 및 기관·법인· | 관체의 명칭·주4 | 5) | | | | | |
| | | | | | | | | 접수방 | 변호 | 접수일 |
| 공표내용 |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 | 과 내용 | | | | | | | 상호(명 칭) | |
| 0- 10 | | | | | | | | 신 청 | 설명(대표자) | |
| | | | | | | | | 인 | 주소(사업장) | |
| | 그 밖의 공표 실효설 확보 | 보를 위해 공급 | 표하도록 결정된 사형 | ţ | | | | | | |
| | | | | | | _ | | | | |
| 소명기한 | 년 월 | 일 명 | 영단공표 예정일 | | 년 | 월 | 일 | | | |
| | 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 |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10조에 따라 상자로 결정 소명사유가 소명기한 니 | | 바명단공표심 표 소명서를 : | 등에 관한 법률」 의위원회의 심의를 소명 기한 내에 제1 할 금액을 모두 널 | 거쳐 위와 급 하시기 바랍니 부하거나, 충 | 같이 명당 니다. 분한 소망 | 관공표 경을 ㅎ | 대 | 행령 | 제12에 따리 | 청구 금지 및 · 고액부정청- |
| 10조에 따라 상자로 결정 소명사유가 소명기한 니 | 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있는 경우 불입 명단 공표 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 바명단공표심 표 소명서를 : | 등에 관한 법률」 의위원회의 심의를 소명 기한 내에 제1 할 금액을 모두 널 | 거쳐 위와 급 하시기 바랍니 부하거나, 충 | 같이 명당 니다. 분한 소망 | 관공표 명을 ㅎ 니다. | 대 | 행령 | | |
| 10조에 따라 상자로 결정 소명사유가 소명기한 니 | 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있는 경우 불일 명단 공표 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 바명단공표심 표 소명서를 : 납부하여야 | 등에 관한 법률」 의위원회의 심의를 소명 기한 내에 제4 할 금액을 모두 날 경우 명단공표 대상 | 거쳐 위와 집 하시기 바랍니 부하거나, 충· 에서 제의될 · | 같이 명당 니다. 분한 소영 수 있습니 | 관공표 명을 ㅎ 니다. | 여 | 행령 | 제12에 따리 | ·고액부정청- |

명단공표 소명서

| 접수법 | 1Ż | 접수일 | | | |
|-------------|---------|-----|-------------|--------|---|
| | 상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신 청 인 | 설명(대표자) | | 담당자 설명 및 연리 | ¥처 | |
| 빈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 |) |
| | | 소 | 명 내용 | | |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

| 년 월 | 일 |
|-----|---|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작설방법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명단공표와관련하여「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 운영하여야한다고하는데만약**기존에유사한심의위원회**를운영할경우, 이를**활용**할수있나요?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제11조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O



2020년이후부터대상이되는이유는「공공재정환수법」부칙에따라부정청구등에관한규정은 법시행(2020.1.1.) 이후최초로지급된공공재정지급금에대한 부정청구등부터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명단공표의 요건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입니다.

아니요, 법시행(2020.1.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 명단을 2022년 3월에 공표해야하나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등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이익등이 발생한 전 기간에 대한 사항을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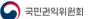
법제25조 행정청은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관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예시

참고 서식

| | | | | | | 2020 - | <u>Ż</u>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 의 명칭 | | | | | | | |
| 지급근거 법률 및 7 | 듀법 처7 | | | | | | | |
| 부정수익지 | ł | | | | | | | |
| 부정청구 유 | 형 | □ 허위청구 | □ 과다청구 | - 목적 | 외사용 | □ 오지급 | | |
| 부정이익 기 | 액 | | | | | | 원 | |
| 제재부가금 부3 | 가금액 | | | | | | 원 | |
| 부정청구 요 | 지 | | | | | | | |
| | | 분일 | 처분 사유 | | 7 5 | + | | |
| 부정청구 요 1. 지급중단 2. 환수처분 | 처 | 분일 | 처분 사유 환수금액 | 이자 | 7 5 | - 날루기환 | | |
| 1. 지급중단 | 처 | 분일 | 환수금액 | | | 날부기한 | | |
| 1. 지급중단 | 처 | | | | | | ÷ | |
| 1. 지급중단 2. 환수처분 | 처(처(| 분일 | 환수금액 납부기한 | 제재부가금 | | 납부기한 데 및 감면 사 | 8 | |
| 1. 지급중단 2. 환수처분 | 처(처(| 분일 | 환수금액 납부기한 | | | 날부기한 | 8 | |
| 1. 지급중단 2. 환수처분 3. 제재부가금 | 처(처(| 분일 | 환수금액 납부기한 | 제재부가금 | 적용배기 | 납부기한 데 및 감면 사 | ? | |

| ☑ 공공재정지급금명칭 |
|-------------|
| ☑ 처분일 |
| ☑ 처분대상자 |
| ☑ 처분사유 |
| ☑ 처분금액및납부기한 |
| ☑ 명단공표방법등 |
| ☑ 기타 |
| |





다른 법률에따라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 환수한 것으로 보므로 「보조금법」,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한 경우에도 기록·관리 해야 합니다.

예, 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기록·관리 해야하나요?

「보조금법」및「지방재정법」에따라환수처분한경우에도 기록·관리해야하나요?



YES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에서 환수가이뤄진 경우에 기록·관리는어느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처분을 이행한 기관(고지서 발부 등)에서 기록·관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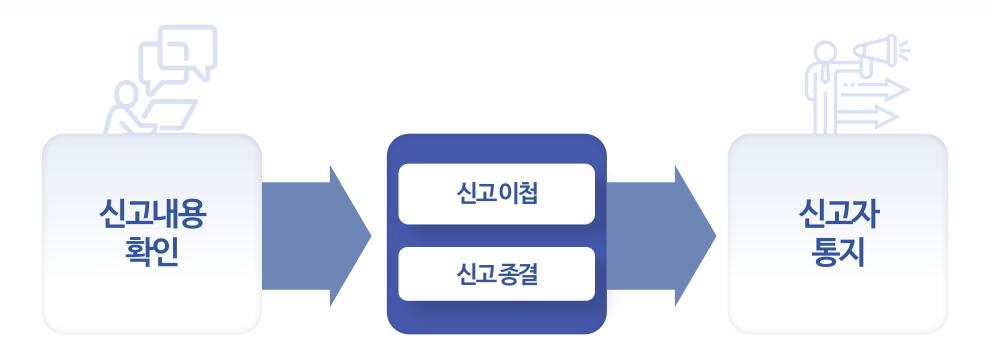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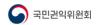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부패신고처리방법·절차등준용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NO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17조에따라 부정청구등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YES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구등신고를 공직유관단체에서 접수·처리할수있나요?

예, 공직유관단체가 소관 공공기관(행정청)일 경우에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17조에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여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부정청구등신고를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예, 허위신고 등 조사·감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에따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8조에따른사항의경우 신고사건을종결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mark>정당한사유가있다면신고를종결</mark>할수있습니다.

YES



Ш





2



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제28조(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의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시정을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당하였을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누구든지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제1항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Ш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신고내용을알수있는자가많지않아신고내용만으로도신고자등을 유추할수있다면신고내용을공개해서는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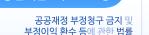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Q 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NO



63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YES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구등신고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알게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신분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이유로해고한것이아니라는점은 사업주가입증해야하고, 입증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위원회는사업주에게원상회복을요구할수있습니다.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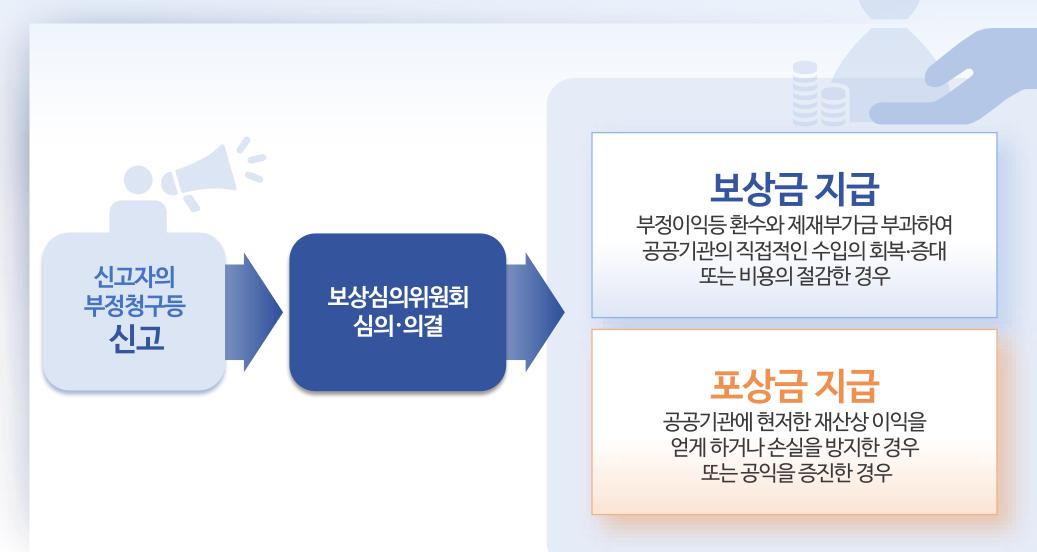
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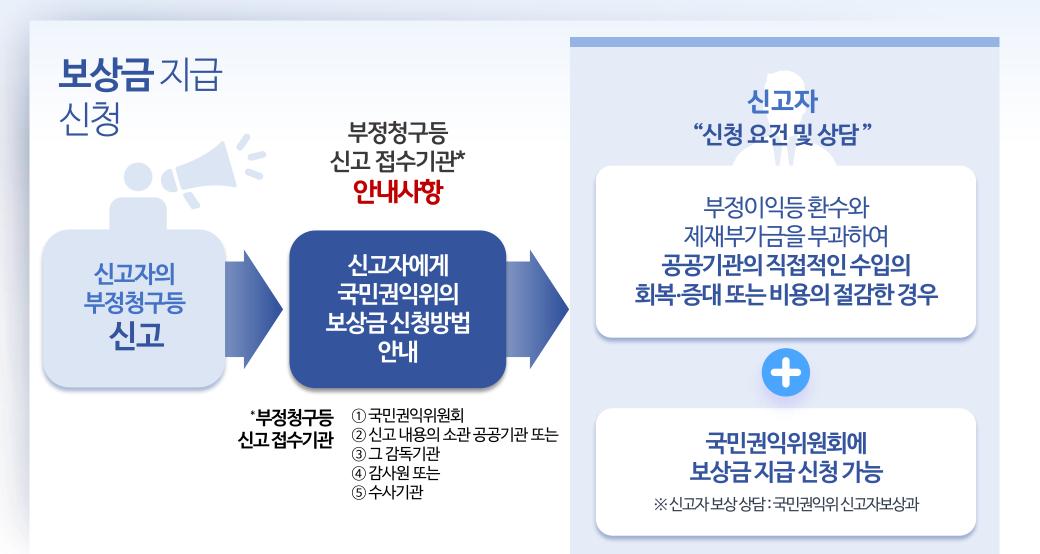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구등 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 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신고자 보상 • 포상





신고자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신고자포상문의:국민권익위신고자보상과

*부정청구등 신고접수기관 실고감독기관 ④감사원또는 ⑤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가능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

지급 대상자 추천

Le C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 보상•포상

포상금지급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

추천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Ш





부정청구등신고로인한부정이익등환수와제재부가금부과에따라 공공기관의직접적인수입의회복·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 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후(환수또는제재부가금부과등에대한 이의신청기간또는구제절차가끝난후)에지급받을수있습니다.

아니요,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나요?



N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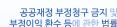


NO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 외의기관에 부정청구등을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17조에따른부정청구등신고접수기관*중 어느기관에 부정청구등 신고를 했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동일한원인에의해다른법령에따라이미보상금을받은자가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이미받은보상금을공제하고지급합니다.

*부정청구등신고접수기관:①국민권익위원회②신고내용의소관공공기관또는③그감독기관④감사원또는⑤수사기관



부정청구등신고,신고자보호·보상



N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정청구등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제22조에서는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